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
| 제정 1973. 7. 1. 규칙 제 9호     | 개정 1993. 7. 15. 규칙 제 795호              |
| 개정 1974. 1. 14. 규칙 제 37호   | 개정 1994. 3. 14. 규칙 제 821호              |
| 개정 1974. 3. 18. 규칙 제 40호   | 개정 1995. 2. 14. 규칙 제 898호              |
| 개정 1974. 4. 19. 규칙 제 42호   | 개정 1995. 7. 25. 규칙 제 920호              |
| 개정 1974. 7. 22. 규칙 제 47호   | 개정 1996. 5. 27. 규칙 제 952호              |
| 개정 1974. 11. 1. 규칙 제 48호   | 개정 1998. 5. 18. 규칙 제 992호              |
| 개정 1975. 2. 25. 규칙 제 51호   | 개정 1999. 1. 1. 규칙 제 1015호              |
| 개정 1976. 6. 1. 규칙 제 95호    | 개정 1999. 12. 6. 규칙 제 1052호             |
| 개정 1976. 6. 10. 규칙 제 96호   | 개정 2007. 3. 5. 규칙 제 1218호              |
| 개정 1976. 10. 13. 규칙 제 105호 | 개정 2007. 11. 14. 규칙 제 1227호            |
| 개정 1977. 6. 12. 규칙 제 126호  | 개정 2008. 6. 18. 규칙 제 1236호             |
| 개정 1978. 3. 26. 규칙 제 137호  | 개정 2008. 12. 4. 규칙 제 1246호             |
| 개정 1979. 7. 16. 규칙 제 153호  | 개정 2009. 9. 4. 규칙 제 1263호              |
| 개정 1980. 3. 9. 규칙 제 162호   | 전부개정 2011. 11. 17. 규칙 제 1312호          |
| 개정 1980. 9. 1. 규칙 제 176호   | 일부개정 2013. 1. 16. 규칙 제 1350호           |
| 개정 1980. 9. 12. 규칙 제 177호  | 일부개정 2013. 12. 31. 규칙 제 1376호          |
| 개정 1980. 11. 8. 규칙 제 182호  | 전부개정 2014. 8. 25. 규칙 제 1396호           |
| 개정 1981. 8. 7. 규칙 제 203호   | 전부개정 2017. 7. 28. 규칙 제 1480호           |
| 개정 1982. 9. 8. 규칙 제 254호   | 일부개정 2018. 1. 5. 규칙 제 1493호            |
| 개정 1983. 9. 7. 규칙 제 271호   |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
| 개정 1984. 11. 30. 규칙 제 331호 |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 1498호            |
| 개정 1985. 3. 2. 규칙 제 340호   |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
| 개정 1986. 4. 1. 규칙 제 381호   | 일부개정 2019. 1. 8. 규칙 제 1519호            |
| 개정 1988. 1. 27. 규칙 제 443호  | 일부개정 2022. 3. 2. 규칙 제 1609호            |
| 개정 1988. 10. 20. 규칙 제 480호 | 일부개정 2023. 9. 20. 규칙 제 1665호           |
| 개정 1989. 8. 17. 규칙 제 545호  | 일부개정 2024. 5. 17. 규칙 제 1661호           |
| 개정 1990. 6. 8. 규칙 제 595호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 개정 1990. 7. 13. 규칙 제 599호  | 일부개정 2024. 5. 17. 규칙 제 1663호           |
| 개정 1991. 1. 9. 규칙 제 639호   | 일부개정 2025. 6. 18. 규칙 제 1685호           |
| 개정 1991. 6. 29. 규칙 제 668호  |  |
| 개정 1991. 7. 19. 규칙 제 670호  |  |
| 전면개정 1993. 3. 2. 규칙 제 757호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삭제 <2024. 5. 17.>
2. 삭제 <2024. 5. 17.>
3. 삭제 <2024. 5. 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4. 5.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삭제 <2023. 9. 20.>

2. 삭제 <2023. 9. 20.>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쟁경력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은 포함한다)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⑥ 응시자에게는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의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5. 6. 18.>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25. 6. 1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

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2. 3. 2.>

② 「국가기술 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 해당하는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표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삭제 <2022. 3. 2.>

⑤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2. 3. 2.>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

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

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

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7과 같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본조신설 2023. 9. 20.]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9. 1. 8.>

[제목개정 2022. 3. 2.]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의 구분은 별표 19와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20과 같다.

⑤ 삭제 <2019. 1. 8.>

⑥ 삭제 <2019. 1. 8.>

⑦ 삭제 <2019. 1. 8.>

### 제3장 임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로 합산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2. 3. 2.>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3. 2., 개정 2025. 6. 18.>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의 기준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

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최초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2025. 6. 18.>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2025. 6. 18.>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2. 3. 2.]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5., 2022. 3. 2., 2023. 9. 2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2. 같은 계급의 공무원
3.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27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2. 3. 2.>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5와 같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5. 6. 18.>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점은 2.4점을,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0., 개정 2025. 6. 18.>

[제목개정 2022. 3. 2.]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지방연구지도 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9. 1. 8., 2023. 9. 20., 2025. 6. 18.>

제29조(시·구 및 동 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동에 해당 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하여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

보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5. 6. 18.>

[본조신설 2019. 1. 8.]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시·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민원창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1. 8.]

제33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보·전출 예외 적용)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합가하기 위한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합가하기 위한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5. 6. 18.]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5. 6. 18.]

부칙 <2017. 7. 28. 규칙 제148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규칙 제1493호,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8. 규칙 제1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규칙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의 7. 외부재원 유공 가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3. 9. 20. 규칙 제1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5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6. 18. 규칙 제1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및 별표 23, 24, 2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6. 18.>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신규임용 시험 | 승진 시험 | 비 고   |
|----|--------------------------|---------|-------|---|
| 1  | 재직증명서 1부                 |         | ○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정함.  |
| 2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       |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
| 3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       |       | 공무원채용신체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
| 4  | 복무확인서 1부                 | ○       |       | 현역군인에 한정함.  |
| 5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 ○     |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
| 6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       | 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청장(지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              |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
| 8  | 이력서 1부                   |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
| 9  | 봉사활동 실적 자기 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 ○       |       |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
| 10 | 수급자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함.               |
| 11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함. |

비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차시험(면접시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 <2023. 9. 20.>

[별표 3] <개정 2024. 5. 1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2항 관련)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br>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br>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br>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 |
|      |                             | 데이터<br>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br>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br>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br>품질관리, 소방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농업기계 | <p>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 기계운전 |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p>  | <p>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p>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br>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전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br>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 자 력 |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br>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기사자격증<br>가산비용 적용 :<br>원자로조종감독자,<br>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
|     | 금 속  |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                       |
|     | 섬 유  |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염색<br/>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일반화공 |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 자 원  |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p>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   |
| 농 업 | 일반농업 |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p>기능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농산물품질관리사</p>   |
|     | 식물검역 |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   |
|     | 축 산  |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p>기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가축인공수정사</p> |
|     | 생명유전 | <p>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br>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br>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br>의사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br>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br>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br>기 능 사 :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br>의사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br><br>기 사 : 산림, 임산가공<br><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br>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br><br>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br><br>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br><br>기 능 사 : 조경,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br>의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br><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br>자연생태복원<br><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br><br>기 능 사 : 잠수                     |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br>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능사 자격증 가<br>산비율 적용 :<br>수산물품질관리사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 능 사 : 식품가공<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 2급<br>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      | 방역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 방사선관리<br>기사: 의공<br>산업기사: 의공<br><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br><br>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p> |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위생사</p>  |
|     | 수 질   |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 환경<br/>측정분석사(수질<br/>환경분야로 한정<br/>한다),<br/>정수시설운영관리<br/>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위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br/>사 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br/>산비율 적용 : 정<br/>수시설 운영관리<br/>사 3급</p> |
|     | 대 기   |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 환경<br/>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위생사</p>   |
|     | 폐 기 물 |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위생사</p>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p>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
|     | 일반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수도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br>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농업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br>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br><br>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br>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
|     | 측 지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br>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br>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도시교통<br>설 계 |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                                      |
|      | 디 자 인       |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 <p>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건축<br/>사</p>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                                      |
| 방재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      | 통신기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 전송기술        |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전자통신 기술 |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2.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기계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               |
|      | 농촌지도 |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               |
| 공업연구 | 전기   |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 건축            |
|      | 전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               |
|      | 금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 섬 유     |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   |
| 화 공     |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   |
| 화 학     |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   |
| 산업경영    |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   |
| 물 리     |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   |
| 농업연구    | <p>농식품 개발</p> <p>기 술 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 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 비율 적용 :<br/>영양사, 위생사</p>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촌지도 | 작 물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농 업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원 예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 산업근층  |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농촌지도 | 잠 업  |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 |
|      | 농촌생활 |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사분석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 농업연구    | 농 공 기 술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 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기 사 :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산업기사 :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농업연구    | 축 산 기 술 사 :     |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농촌지도    | 축 산 기 사 :       | 축산, 식품  |  |
|         | 산업기사 :          | 축산, 식품  |  |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가축인공수정사              |
| 녹지연구        | 임 업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             | 조 경             |   |   |
| 농촌지도        | 임 업             |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 술 사 :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의사,<br>한의사, 치과의사,<br>수의사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기 사 : 축산<br>산업기사 : 축산   |   |
| 해양수산<br>연 구 | 해양환경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             | 수산자원            |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br>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
| 어촌지도        | 어 촌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해양수산<br>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br>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br>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br>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식품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br>: 의사, 치과의사,<br>한의사, 수의사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약사,<br>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br>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br>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br>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의사,<br>한의사, 치과의사,  |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br>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br>폐기물처리, 식품, 의공<br><br>임상심리사 1급<br>임상심리사 2급  | 수의사, 약사, 한<br>약사, 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특수,<br>일반), 방사선 취<br>급감독자, 응급구<br>조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임상병리사, 보건<br>의료정보관리사,<br>방사선사, 간호사,<br>조산사, 물리치료<br>사, 치과기공사,<br>치과위생사, 작업<br>치료사, 위생사,<br>영양사, 응급구조<br>사 2급 |
| 환경연구 환 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br>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br>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br>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광해방지<br><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br>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br>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br>기상, 광해방지<br><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br>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br>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사 자격증 가산<br>비율적용 : 의사,<br>약사, 수의사, 환<br>경측정분석사<br><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적용 : 위<br>생사   |
| 시설연구 토 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br>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br>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br>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br>안전, 교통, 광해방지<br><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br>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br>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시설연구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
| 방재안전 연구 | 안전 관리           | 기사 : 방재  |                       |
|         | 재난 관리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4] <개정 2025. 6. 18.>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2항 관련)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2급<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4급<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6급<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6급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항공      | 조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설      | 지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br>산업기사(지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br>산업기사(지적)<br>기능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위생      | 위생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사역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조리      | 조리   |   | 조리기능장<br>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기능장<br>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r>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운전      | 운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4. 5. 1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 8·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24. 5. 17.>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br>기사(6년),<br>산업기사(9년),<br>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br>산업기사(6년) | 기사,<br>산업기사(3년),<br>기능사(4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2년) | 산업기사,<br>기능사(2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br>전국기능경기대회<br>입상자(2년)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1) 2급 : 10년 이상
  - 2) 3급 : 8년 이상
  - 3) 4급 :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은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7] <개정 2024. 5. 1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전 산  | 전 산<br>데이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농업기계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기계운전 |            |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전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br>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br>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br>기 능 사 : 염색<br>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 능 장 : 위험물, 가스<br>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br>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br>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br>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br>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식물검역  |
|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br>기 사 : 축산,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br>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 녹 지  | 조 경   |
| 산림자원 |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산림보호 |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기 능 사 : 산림  |
| 산림이용 |      | 기 술 사 : 산림<br>기 사 : 산림,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 일반해양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 능 사 :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대 기   |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폐 기 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br>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br>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 : 항공<br>산업기사 : 항공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br>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br>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br>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br>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br>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br>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br>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수도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br>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br>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br>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농업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br>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br>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br>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br>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지적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건축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도시교통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능장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br>기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br>기능사 :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통신 | 통신사<br>통신기술<br>전송기술<br>전자통신기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조리<br>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br>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위생   | 사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br>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br>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행 정                                    | 일반행정<br>법무행정                | 변호사,<br>변리사(4)           | 변리사                           |                       |
|      | 재 경<br>국제통상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노 동          | 변호사<br>공인노무사(7)<br>직업상담사<br>1급<br>(10) | 공인노무사(3)<br>직업상담사<br>1급(6)  | 공인노무사<br>직업상담사<br>1급(3)  | 직업상담사<br>1급<br>직업상담사<br>2급(3) | 직업상담사<br>2급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감정평가사(7)<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br>세무사(3) | 감정평가사<br>세무사             |                               |                       |
|      | 감 사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br>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br>감정평가사(3) | 세무사<br>감정평가사             |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             | 세무사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br>사회복지사<br>1급(7)                  | 사회복지사<br>1급(3)              | 사회복지사<br>1급              | 사회복지사<br>2급                   | 사회복지사<br>3급           |
| 전 산  | 전 산<br>데 이 터 |  | 멀티미디어콘<br>텐츠제작전문<br>가(9)    | 멀티미디어콘<br>텐츠제작전문<br>가(6) | 멀티미디어콘<br>텐츠제작전문<br>가(3)      | 멀티미디어콘<br>텐츠제작전문<br>가 |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br>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br>1급                                      | 무대조명전문인<br>2급                        | 무대조명전문인<br>3급                        |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br>1급<br>무대음향전문인<br>1급                     | 무대기계전문인<br>2급<br>무대음향전문인<br>2급       | 무대기계전문인<br>3급<br>무대음향전문인<br>3급       |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br>감독자(5),<br>핵연료물질<br>취급감독자(5),<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특수),<br>방사선취급<br>감독자(5)            | 원자로조종<br>감독자, 원자로조<br>종사(3),<br>핵연료물질<br>취급감독자,<br>핵연료물질<br>취급자(3),<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일반)(3),<br>방사선취급<br>감독자 | 원자로조종사,<br>핵연료물질<br>취급자,<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br>(7)<br>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br>(3)<br>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br>수의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br>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br>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br>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br>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br>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의사(2)<br>한의사(2)<br>치과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한약사(7)<br>조산사(12)<br>간호사(12)<br>보건교육사1급<br>(7) | 수의사(3)<br>약사(3)<br>한약사(3)<br>조산사(6)<br>간호사(6)<br>보건교육사1급<br>(3)   | 수의사<br>약사<br>한약사<br>조산사(3)<br>간호사(3)<br>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br>간호사<br>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 방 역   | 의사(2)<br>한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간호사(12)   | 수의사(3)<br>약사(3)<br>간호사(6)   | 수의사<br>약사<br>간호사(3)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br>영양사(12)  | 위생사(8)<br>영양사(8)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12)<br>방사선사(12)<br>물리치료사(12)<br>치과기공사(12)<br>치과위생사(12)<br>작업치료사(1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12)<br>안경사(12)<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특수)<br>방사선취급<br>감독자(5)<br>임상심리사1급(7) | 임상병리사(8)<br>보건의료정보관리사(8)<br>방사선사(8)<br>물리치료사(8)<br>치과기공사(8)<br>치과위생사(8)<br>작업치료사(8)<br>보건의료정보관리사(8)<br>안경사(8)<br>방사성동위원소취<br>급자(일반)(3)<br>방사선취급감독자<br>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br>보건의료정보관리사(5)<br>방사선사(5)<br>물리치료사(5)<br>치과기공사(5)<br>치과위생사(5)<br>작업치료사(5)<br>보건의료정보관리사(5)<br>안경사(5)<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일반)<br>임상심리사1급 | 임상병리사(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2)<br>방사선사(2)<br>물리치료사(2)<br>치과기공사(2)<br>치과위생사(2)<br>작업치료사(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2)<br>안경사(2)<br>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br>보건의료정보관리사<br>방사선사<br>물리치료사<br>치과기공사<br>치과위생사<br>작업치료사<br>보건의료정보관리사<br>안경사 |
| 의 무  | 일반의무  |    | 의사(2)<br>한의사(2)  |  |  |  |  |
|      | 치 무   |    | 치과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 약사(7)<br>한약사(7)  | 약사(3)<br>한약사(3)  | 약사<br>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 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위생사(12)<br>환경측정분석사(7)<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br>약사(3)<br>위생사(8)<br>환경측정분석사(3)<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br>약사<br>위생사(5)<br>환경측정분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위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
|      | 수 질   |    |  |  |  |  |  |
|      | 대 기   |    |  |  |  |  |  |
|      | 폐 기 물 |    |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 운송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br>항공사(10)<br>항공기관사(10)<br>항공교통관제사(10)<br>항공정비사(10)<br>항공공장정비사(10)<br>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br>항공사(6)<br>항공기관사(6)<br>항공교통관제사(6)<br>항공정비사(6)<br>항공공장정비사(6)<br>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br>항공사(3)<br>항공기관사(3)<br>항공교통관제사(3)<br>항공정비사(3)<br>항공공장<br>정비사(3)<br>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br>항공사<br>항공기관사<br>항공교통관제사<br>항공정비사<br>항공공장정비사<br>운항관리사   |  |
|      | 조 종   |    | 운송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 항공정비사(10)<br>항공공장정비사(10)<br>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br>항공공장정비사(6)<br>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br>항공공장정비사(3)<br>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br>항공공장정비사<br>항공기관사  |  |
| 시 설  | 건 축   |    | 건축사(5)<br>문화재수리기술자<br>(보수기술자)(12)  | 건축사<br>문화재수리기술자<br>(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br>(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br>(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br>(보수기술자)  |
|      | 디 자 인 |    | 건축사(5)   | 건축사  |  |  |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류 | 속기 |    |    |                   |                   |   |
| 속 기 | 속기 |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 위 생 | 위생 |    |    |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     | 사역 |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 운 전 | 운전 |    |    |    |                   |                   | 계1종운전면허(대형)<br>계1종운전면허(보통)<br>계2종운전면허(보통)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22. 3. 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 직렬 | 직류 |   |   |  |
| 공업연구 | 기  |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    | 전  |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금  | 속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    |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 섬  |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 화  | 공  | 화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
|      |    |    | 화   | 화학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      | 물  | 리  | 물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리    |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  |
| 농업연구 | 작  |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  |
|      |    |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  |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류    |  |  |  |
| 농업연구   | 원 예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생명유전  |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농촌생활  |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br>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 축산    |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농공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농식품개발 |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업    |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 조경    |  |  |  |
| 수의연구   | 수의    |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공학  |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경제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보건연구   | 의학    |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학    |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      | 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도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br>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시설연구   | 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 기사(방재)  |
|        | 재난관리 |    |   | 기사(방재)  |

-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지도관  | 지도사  |
|---------|---------|--|--|--|
|         | 직렬      | 직류   |  |  |
| 농촌지도    | 농       |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임       |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잠       | 업  | 기술사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6)<br>※1999.3.27이전 취득   |
|         | 원       |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축       |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가 축 위 생 |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 농 촌 사 회 |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농 업 기 계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농 업 토 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 촌 생 활 |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 어촌지도    | 어       |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br>수산질병관리사  |

-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9] <개정 2025. 6. 1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2항·제3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   | 2급 · 연구관<br>지도관                            | 3급 · 연구관<br>지도관      | 4급 · 연구관<br>지도관      | 5급 · 연구관<br>지도관 | 6급 · 연구사<br>지도사 | 7급 · 연구사<br>지도사 | 8급              | 9급       |    |
|------------------------|---|--|----------------------|----------------------|-----------------|-----------------|-----------------|-----------------|----------|----|
|                        |   | 직무분야                                       | 2급 · 연구관<br>지도관      | 3급 · 연구관<br>지도관      | 4급 · 연구관<br>지도관 | 5급 · 연구관<br>지도관 | 6급 · 연구사<br>지도사 | 7급 · 연구사<br>지도사 | 8급       | 9급 |
| 경찰공무원                  |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br>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공무원                  |   | 소 방<br>경 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군인                     |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br>준위<br>원사  | 상사<br>중사        | 하사       |    |
| 교육<br>공무원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br>포함)교원                                     | 교수<br>(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br>강사        |                 |                 |          |    |
|                        | 「사립학교<br>교원포함」<br>초·중·<br>고등학교<br>교원 및<br>기타<br>교육공<br>무원 | 공무원보수 규정 별<br>표 11적용 대상자                   |                      |                      | 24호봉<br>이상      | 16호봉<br>이상      | 12호봉<br>이상      | 11호봉<br>이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 별<br>표 12적용<br>대학봉급액란 적용<br>대상자   |                      |                      | 17호봉<br>이상      | 11호봉<br>이상      | 7호봉<br>이상       | 6호봉<br>이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 별<br>표 12중 전문대학<br>봉급액란 적용대상<br>자 |                      |                      | 19호봉<br>이상      | 13호봉<br>이상      | 9호봉<br>이상       | 8호봉<br>이하       |          |    |
| 판사·검사                  |   | 9호봉<br>이상                                  | 6호봉<br>이상            | 4호봉<br>이상            |                 |                 |                 |                 |          |    |
| 기능직공무원                 |   |  |                      |                      |                 | 6급<br>이상        | 7급              | 8급              | 9급<br>이하 |    |
| 관 련 직 무 분 야<br>박사학위소지자 |   | 박사학위<br>소지후<br>10년 이상                      | 박사학위<br>소지후<br>8년 이상 | 박사학위<br>소지후<br>4년 이상 | 박사학위<br>소지자     |                 |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br>3년 이상                |                      |                      |                 |                 | 6년              | 3년              | 3년       | 3년 |

- 비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24. 5. 17.>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      |      |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      | 국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      |      | 국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 편사연구 | 편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업연구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 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자   |   |  |
|      | 금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섬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화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물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 농업연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류        |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경영      |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산업곤충      |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        | 원 예       |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생명유전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촌생활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        | 축 산       |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 공       |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 식 품 개 발 |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
| 농지연구   | 임 업       |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 조 경       |  |   |
| 수의연구   | 수 의       |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자원      |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류   |  |  |
| 해양수산<br>연구 | 수산공학 |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가공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경제 |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       | 의 학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약 학  |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중보건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 경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 토 목  |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시설연구       | 건 축  |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안전관리 |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 방재안전<br>연구 | 재난관리 |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11] <개정 2024. 5. 1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5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원 자 력  |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
|             | 조 선    |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
|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섬 유    |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
|             | 일반화학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br>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 금 속    |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모형주조), 판금용접                                |
|             | 자 원    | 광산, 자원개발, 지질  |
| 녹 지         | 산림자원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             | 산림보호   | 임업, 임학, (농)생물학  |
|             | 산림이용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 축 산    |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
| 수 의         | 수 의    | 수의학   |
| 환 경<br>해양수산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 일반해양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
|             | 일반수산   |   |
|             | 일반선박   |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
|             | 선박항해   | 항해(학)   |
|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
|             | 어 로    |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
|             | 해양교통신설 |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             | 지 적    |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
|             | 축 지    |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br>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통신기술   |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기술 |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
|             | 조 종    | 항공운항학   |
|             | 정 비    |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 약 무         | 약 무    |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 직 렬     | 관 련 학 과   |
|---------|---|
| 농 촌 지 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
| 어 촌 지 도 |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

[별표 12] <개정 2019. 1.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5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고: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의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임.

[별표 13] <개정 2019. 1. 8.>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5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연구사 및 지도사 |
|------|----|---|---|---|------------|
| 연구경력 | 박사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          |
|      | 석사 | 8년  | 12년   | 4년  | -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지도관  | 지도사   |
|------|------------------------------|--|---|
|      | 직류                           |  |   |
| 농촌지도 | 전직류<br>(농촌생활<br>직류는<br>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어촌지도 | 어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비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5] <개정 2024. 5. 17.>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5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br>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br>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br>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br>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br>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한시<br>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 (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7] <개정 2025. 6. 18.>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예정직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관련) 응시자격 요건**

(제15조제10항 관련)

1. 향측관리요원

| 직위군 | 응시자격요건   |
|-----|--|
| 나군  | 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해당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
| 다군  | 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br>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화생방요원

| 직위군 | 응시자격요건   |
|-----|--|
| 나군  | 1.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화생방 관련분야 직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기술분야(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 기능자 등)에 종사한 사람</li> <li>•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 등에 종사한 사람</li> </ul> 2. 원자력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군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br>4.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군은 군화학병과 또는 전투병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그 밖의 전문경력관

| 직위군 | 응시자격요건  |
|-----|---|
| 가군  |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군  |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br>4. 8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5.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군  | 1.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br>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비교: 1. 응시요건 중 가군,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8] 삭제 <2019. 1. 8.>

[별표 19] <개정 2022. 3.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계급  |   |   |
|---------|------|---|---|---|
|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행정      | 운수   |   |   |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산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기      | 속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         | 농업기계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기계운전 |   |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공<br>업  | 기계운전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br>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         | 전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br>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
|         | 원자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금속<br>야금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br>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가 스                                   |                                     |  |  |
| 공 업  | 가 스       |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가스)<br>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자 원       |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농 업  | 일반농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잠 업       |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 식물검역      |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농 화 학     |                                       | 기술사(농화학)                            |  |  |
|      | 축 산       |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 녹 지       | 산림자원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산림보호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조 경       |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수 의  | 수 의       |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 수산제조      |                                       |                                     |  |  |
|      | 수산증식      |                                       |                                     |  |  |
|      | 어 로       |                                       |                                     |  |  |
|      | 수 산 물 검 사 |                                       |                                     |  |  |
|      | 해양교통시설    |                                       |                                     |  |  |
| 일반선박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직렬   | 계급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기술사(조선)<br>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br>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br>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5·6급 기관사   |
| 보건   | 보건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2급              |
|      | 방역   |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위생   | 위생   |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사역   |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기술사(방사선 관리)<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무   | 일반의무 |  | 의사, 한의사  |  |   |
|      | 치무   |  | 치과의사   |  |   |
| 약무   | 약무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약제   |  |  |  |   |
| 간호   | 간호   |  |  | 간호사, 조산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 간호사, 조산사   |   |
| 환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광해방지)<br>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 계급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              | 직류   |   |   |      |
| 환경 | 수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대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 폐기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 항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br>자가용조종사  |      |
|    | 조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 정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 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br>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 일반토목<br>수도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직렬     |        | 계급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        |        | 직류   |  |  |      |
| 시 설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지 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 및 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도시교통시설 |  |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통신기술   |  |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      |
|        | 전송기술   |  |  |  |      |
| 전자통신기술 |        |  |  |  |      |
| 조리     | 조리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운전      | 전직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비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0] <개정 2022. 3.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공 업 연 구 | 기 계     | 공 업     | 일 반 기 계 |
|         |         |         | 농 업 기 계 |
|         | 전 기     |         | 전 기     |
|         | 전 자     |         | 전 자     |
|         | 금 속     |         | 금 속     |
|         | 섬 유     |         | 섬 유     |
|         | 화 공     |         | 화 공     |
|         | 화 물     |         | 화 물     |
| 농 업 연 구 | 작 물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화 학   |
|         | 농 업 환 경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화 학   |
|         | 작 물 보 호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식 물 검 역 |
|         | 농 업 경 영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경 영 |
|         | 산 업 곤 충 | 농 업     | 잠 업     |
|         |         | 농 촌 지 도 | 잠 업     |
|         | 원 예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화 학   |
|         | 생 명 유 전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화 학   |
|         | 농 촌 생 활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촌 지 도 | 농 촌 사 회 |
|         |         |         | 농 촌 생 활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농업연구    | 축 산     | 농 업     | 축 산                |
|         |         | 농 촌 지 도 | 축 산                |
|         | 농 공     | 공 업     | 농 업 기 계            |
|         |         | 시 설     | 농 업 토 목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기 계<br>농 업 토 목 |
| 녹지연구    | 임 조 업 경 | 임 업     | 전 직 류              |
| 수의연구    | 수 의     | 수 의     | 수 의                |
| 해양수산연구  | 해 양 환 경 | 환 경     | 수 질                |
|         |         | 해 양 수 산 | 일 반 수 산            |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         | 수 산 자 원 | 해 양 수 산 | 일 반 수 산            |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         | 수 산 양 식 | 해 양 수 산 | 수 산 중 식            |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         | 수 산 공 학 | 해 양 수 산 | 어 로                |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         | 수 산 가 공 | 해 양 수 산 | 수 산 제 조            |
|         |         | 어 촌 지 도 | 수 산 물 검 사          |
|         | 수 산 경 제 | 해 양 수 산 | 일 반 수 산            |
| 어 촌 지 도 |         | 어 촌     |                    |
| 보건연구    | 의 학     | 의 무     | 일 반 의 무            |
|         |         |         | 치 무                |
|         | 약 학     | 약 무     | 약 무                |
|         |         |         | 약 제                |
| 공 중 보 건 | 보 건     | 보 건     |                    |
|         | 식 품 위 생 | 식 품 위 생 |                    |
| 환경연구    | 환 경     | 환 경     | 전 직 류              |
| 시설연구    | 토 목     | 시 설     | 일 반 토 목            |
|         | 건 축     |         | 농 업 토 목            |
| 방재안전연구  | 안 전 관 리 | 방 재 안 전 | 방 재 안 전            |
|         | 재 난 관 리 |         |                    |



2. 지도직공무원

| 지 도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농 촌 지도  | 농 업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농 업 연구     | 작 물     |
|         |           |            | 작 물 보 호 |
|         |           |            | 농 업 환 경 |
|         |           |            | 농 업 경 영 |
|         | 농 업 경 영   | 농 업 연구     | 농 업 경 영 |
|         | 임 업       | 녹 지        | 전 직 류   |
|         |           | 녹 지 연구     | 임 업     |
|         | 잠 업       | 농 업        | 잠 업     |
|         |           | 농 업 연구     | 산 업 곤 충 |
|         | 원 예       | 농 업 연구     | 원 예     |
|         | 축 산       | 농 업        | 축 산     |
|         |           | 농 업 연구     | 축 산     |
|         | 가 축 위 생   | 수 의        | 수 의     |
|         |           | 수 의 연구     | 수 의     |
|         | 농 촌 사 회   | 농 업 연구     | 농 촌 생 활 |
|         | 농 업 기 계   | 공 업        | 농 업 기 계 |
|         |           | 농 업 연구     | 농 공     |
|         | 농 업 토 목   | 시 설        | 농 업 토 목 |
|         |           | 농 업 연구     | 농 공     |
| 농 촌 생 활 | 농 업 연구    | 농 촌 생 활    |         |
| 어 촌 지도  | 어 촌       | 해 양 수 산    | 일 반 수 산 |
|         |           |            | 수 산 제 조 |
|         |           |            | 수 산 중 식 |
|         |           |            | 어 로     |
|         | 수 산 물 검 사 |            |         |
|         |           | 해 양 수 산 연구 | 전 직 류   |

[별표 2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 직 급 | 연 구 직  | 지 도 직   |
|-----|--|---|
| 2 급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3 급 |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4 급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5 급 |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
| 6 급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7 급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 8 급 |  |   |
| 9 급 |  |   |

비고: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2] <개정 2019. 1. 8.>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24조제2항 관련)

| 구분   |                         | 상당 계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일반직  |                         |                                      | 기관·부서의 장인<br>연구관 지도관                 | 연구관<br>지도관                         | 연구사<br>지도사                       |                  |  |   |
| 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국가)전문<br>임기제           |                                      | “가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다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라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br>봉급한계액의 6할을<br>초과한 봉급을 받고<br>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br>봉급한계액의 6할<br>이하의 봉급을 받고<br>제직할 기간 |
|  | (지방)전문<br>임기제           |                                      | “가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br>제직할 기간                   |                                  |                  |  |   |
|  | 한시임기제                   |                                      |                                      | “5호”로<br>제직할 기간                    | “6호”로<br>제직할 기간                  | “7호”로<br>제직할 기간  | “8호”로<br>제직할 기간                                    | “9호”로<br>제직할 기간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                                      | “가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나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다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라급”으로<br>제직할 기간                                   | “마급”으로<br>제직할 기간                                  |
| 전문경력관  |                         |                                      | “가”군<br>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br>이하                    | “나”군<br>28호봉 이상                  | “나”군<br>27호봉 이하  | “다”군<br>28호봉 이상                                    | “다”군<br>27호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경찰공무원  |                         |                                      | 총경                                   | 경정                                 | 경감<br>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공무원  |                         |                                      | 소방정<br>지방소방정                         | 소방령<br>지방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br>지방소방경<br>지방소방위     | 소방장<br>지방소방장     | 소방교<br>지방소방교                                       | 소방사<br>지방소방사                                      |
| 군인   |                         |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br>·중사                                       | 하사  |
| 군무원(특정직)<br>국가정보원<br>(특정직·일반직)<br>경호공무원(특정직)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교육공무원  | 대 학 교 원<br>(전문대학 포함)    |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
|  | 초·중등교원<br>및 기타<br>교육공무원 | 초·중등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
|  | 대학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대학 :<br>17-23호봉<br>전문대학 :<br>19-25호봉 | 대학 :<br>11-16호봉<br>전문대학 :<br>13-18호봉 | 대학 :<br>7-10호봉<br>전문대학 :<br>9-12호봉 | 대학 :<br>6호봉이하<br>전문대학 :<br>8호봉이하 |                  |  |   |
| 관사·검사  |                         |                                      | 4-2호봉                                |                                    |                                  |                  |  |   |

[별표 23] <개정 2025. 6. 18.>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계급<br>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정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산                       | 기술사(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업<br>(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조선, 방송통신, 교통, 궤도장비정비, 승강기)<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산업기사(운할관리,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교통, 조선,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3급) |

| 직렬                 | 계급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공업<br>(전기)         |    |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 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3급) |
| 공업<br>(금속)         |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공업<br>(섬유)         |    | 기술사(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br>생사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함)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
| 공업<br>(화공)<br>(가스)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화학분석)<br>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3급)  |
| 공업<br>(자원)         |    | 기술사(자원관리, 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 농업<br>(농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생사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함)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 농업<br>(축산)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축산, 식품)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br>가축인공수정사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계급<br>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녹지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자연생태복원, 농림토양평가관리)          |
| 수의           | 수의사   |   |   |
| 해양수산<br>(수산)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
| 해양수산<br>(선박) |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br>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수 의사, 약사, 한 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광해방지, 인간공학)<br>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약사, 한 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br>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
| 의무           |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   |   |
| 약무           | 약사, 한 의사, 한 약사  |   |   |
| 간호           |   |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전문간호사   | 사회복지사 2급  |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계급<br>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환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능장(산림, 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
| 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br>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br>자가용조종사  |
| 시설<br>(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방재)<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
| 시설<br>(토목, 수도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 시설<br>(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수)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시설<br>(지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시설<br>(측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시설<br>(교통)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정,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방송통신<br>(통신사)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
| 방송통신<br>(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
| 방송통신<br>(전자통신<br>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



| 직렬 \ 계급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위생      |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br>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br>위생사, 영양사  |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br>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토목운영    |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축운영    |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건축사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통신운영    |    | 기술사(정보통신)<br>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br>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
| 전기운영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계급<br>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 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br>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
| 기계운영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운환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
| 화공운영                     |    | 기술사(화공, 화공안전)<br>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능장(위험물, 가스)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가스운영                     |    |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br>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br>기능장(가스, 위험물)   |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
| 선박항해<br>운영<br>선박기관<br>운영 |    |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br>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br>1·2·3·4급 항해사<br>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br>5·6급 기관사   |

| 직렬 \ 계급 | 5급 | 6급·7급   | 8급·9급   |
|---------|----|---|---|
| 농림운영    |    |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br>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
| 보건운영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br>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2. 연구사

| 계급<br>직렬            | 연구사   |
|---------------------|---|
| 공업연구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생사, 의류, 자원관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
| 농업연구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농업연구<br>(산업곤충)      | 기술사(생사)   |
| 농업연구<br>(축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br>수의사  |
| 농업연구<br>(농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
| 농업연구<br>(농식품<br>개발) |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br>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br>영양사, 위생사   |

| 계급<br>직렬     | 연구사   |
|--------------|---|
| 녹지연구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br>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 해양<br>수산연구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
| 보건연구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br>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br>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환경연구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br>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 시설연구<br>(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 시설연구<br>(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건축사  |

3. 지도사

| 직렬 \ 계급 | 지도사   |
|---------|---|
| 농촌지도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산업,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어촌지도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이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표 24] <개정 2025. 6. 18.>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가산점(제27조 관련)

| 구 분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 기준점수    | 가산점  |
|-------------|-----------------------|---------|------|
| 영어          | 토플(TOEFL IBT)         | 71점 이상  | 0.25 |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
|             | 텝스(TEPS)              | 340점 이상 |      |
|             | 지텔프(G-TELP) Level2    | 65점 이상  |      |
|             |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EX)   | 625점 이상 |      |
|             |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AT)   | 60점 이상  |      |
|             |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 140점 이상 |      |
|             | 텝스스피킹(TEPS SPEAKING)  | 60점 이상  |      |
|             | 오픽(OPIc)              | IM3 이상  |      |
| 그 밖의<br>외국어 | 서울대 어학능력검정(SNULT)     | 60점 이상  | 0.25 |
|             |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EX)   | 625점 이상 |      |
|             |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AT)   | 60점 이상  |      |

- 비 고: 1. 위의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해당 언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및 말하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토플 36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Level2 43점, SNULT 30점, FLEX 375점)

[별표 25] <개정 2025. 6. 18.>

###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 (제27조 관련)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 가 점     |
|------------------------------|--|---------|
| 1. 새로운 업무발굴, 업무 관련 창안 및 업무개선 | ① 업무관련 제안(창안) 채택자<br>○ 中央제안<br>- 금 상                    1.5<br>- 은 상                    1.2<br>- 동 상                    1.0<br>- 장려상                  0.8<br>- 노력상                  0.5<br><br>○ 道제안<br>- 금 상                    1.2<br>- 은 상                    1.0<br>- 동 상                    0.8<br>- 장려상                  0.5<br>- 착안상                  0.3<br><br>○ 市(자체) 제안<br>- 금 상                    1.0<br>- 은 상                    0.8<br>- 동 상                    0.5<br>- 장려상                  0.3<br>- 노력상                  0.2<br><br>※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1.5점 이내 |
|                              | ② 담당분야 새로운 업무 발굴 및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br>(국·소·구청장이 추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br>○ 탁 월                    0.5<br>○ 우 수                    0.25   | 0.5점 이내 |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 가 점   |
|--|---|---|
|  | ③ 자원봉사활동 우수자<br>(자원봉사센터 등록자로서 센터에서<br>인증하는 봉사실적시간)<br>○ 기간 내 30시간 이상<br>○ 기간 내 20~30시간 미만<br>○ 기간 내 15~20시간 미만<br>※ <a href="http://www.1365.go.kr">http://www.1365.go.kr</a> 에서<br>본인이 직접출력 제출   | 0.25점 이내<br><br>0.25<br>0.20<br>0.15                                  |
| 2. 예산절감기여 (제도, 기술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만 인정)   | ④ 예산절감액<br>○ 연간 1억원 이상<br>○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br>○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0.7점 이내<br><br>0.7<br>0.5<br>0.3                                      |
| 3. 시책 · 업무추진 우수<br><br>※ 취합 또는 업무보조자는 해당 점수의 50%만 부여<br>※ 동일업무로 연속 수상 시 1점한도내 부여 | ⑤ 심사분석, 업무추진 및 평가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br><br>○ 중앙부처 또는 전국단위평가 (민간기관 공동평가 포함)<br>- 최우수(1위)(실무자, 실무팀장)<br>- 우 수(2위)(실무자, 실무팀장)<br>- 장 려(3위)(실무자, 실무팀장)<br><br>○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평가<br>- 최우수(1위)(실무자, 실무팀장)<br>- 우 수(2위)(실무자, 실무팀장)<br>- 장 려(3위)(실무자, 실무팀장) | 1.0점 이내<br><br>각 1.0<br>각 0.7<br>각 0.5<br><br>각 0.7<br>각 0.5<br>각 0.3 |
|  | ⑥ 친절도 측정 우수자 및 시민 추천 친절공무원<br>- 친절공무원으로 2회 이상 선정<br>- 친절공무원으로 1회 선정   | 1<br>0.5  |

|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가 점      |
|----------------|---|----------|
|                | ⑦ 격무부서 근무자로 근무성적평정<br>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br>○ 2년 6개월 이상 3.0<br>○ 2년 이상 2.5<br>○ 1년 6개월 이상 2.0<br>○ 1년 이상 1.5<br>○ 6개월 이상 1.0  | 3.0점 이내  |
|                | ⑧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br>○ 3년 이상 1.5<br>○ 2년 6월 이상 1.25<br>○ 2년 이상 1.0<br>○ 1년 6월 이상 0.75<br>○ 1년 이상 0.5  | 1.5점 이내  |
|                | ⑨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br>- 최우수 3<br>- 우 수 2<br>- 장 려 1<br>※총괄부서 자체평가 후 선정 통보자   | 3점 이내    |
|                | ⑩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br>- 최우수 3<br>- 우 수 2<br>- 장 려 1<br>※총괄부서 자체평가 후 선정 통보자   | 3점 이내    |
|                | ⑪ 기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br>하는 특수업무 수행실적<br>○ 탁 월 0.25<br>○ 우 수 0.15   | 0.25점 이내 |
| 4.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 | ⑫ 인정가액(투자액×0.06%×기여도) 기준<br>- 2000만원 이상 3<br>- 1,600만원 ~ 2,000만원 미만 2.5<br>- 1,000만원 ~ 1,600만원 미만 2<br>- 800만원 ~ 1,000만원 미만 1.5<br>- 600만원 ~ 800만원 미만 1<br>- 400만원 ~ 600만원 미만 0.5<br>- 200만원 ~ 400만원 미만 0.3<br>(단, 업무관련자는 해당점수의 50% 부여) | 3.0점 이내  |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 가 점  |
|-----------------|---|--|
| 5. 청렴활동 우수      | ⑬ 청렴활동 우수공무원<br>- 감사관 청렴활동 평가결과 상위 5명   | 각 0.1점                                     |
| 6. 출산장려 정책 이행   | ⑭ 자녀 출산 공직자<br>- 첫째 출산<br>- 둘째 출산<br>- 셋째 출산<br>- 넷째 출산<br>※ 자녀 출산 후 출산한 당시 직급 내<br>원하는 시기에 가점 신청<br>※ 부부공무원일 경우 각각 적용<br>※ 첫째는 2020.1.1. 이후, 둘째는 2019. 1. 1.<br>이후, 셋째~넷째는 2018. 5. 1. 이후<br>출산한 공무원부터 적용(소급 불가) | 3.0점 이내<br>1.0<br>1.5<br>2.5<br>3.0        |
| 7. 외부재원 확보 유공   | ⑮ 국·도비 확보 기준<br>- 100억원 이상<br>-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br>-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br>-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br>-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0점 이내<br>3.0<br>2.0<br>1.0<br>0.5<br>0.3 |

[별표 26] <중전 별표 25에서 이동 2022. 3. 2.>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 임용예정 계급                   |  | 2급·연구관<br>·지도관 | 3급·연구관<br>·지도관 | 4급·연구관<br>·지도관    | 5급·연구관<br>·지도관         | 6급·연구사<br>·지도사    | 7급·연구사<br>·지도사    | 8급  | 9급 |
|---------------------------|--|----------------|----------------|-------------------|------------------------|-------------------|-------------------|-----|----|
| 교육공무원                     | 대학, 교육<br>대학, 전문<br>대학(사립<br>학교 및 동<br>부설 연구<br>소의 교원<br>포함) | 교수             | 교수<br>부교수      | 부교수<br>조교수        | 조교수<br>전임강사<br>(2년 이상) | 전임강사              |                   |     |    |
|                           | 고등학교   |                |                | 24호봉<br>이상의<br>교원 | 16호봉<br>이상의<br>교원      | 12호봉<br>이상의<br>교원 | 11호봉<br>이하의<br>교원 |     |    |
| 정부투자기관<br>및 정부산하기<br>관·단체 |  | 이사<br>(3년 이상)  | 이사             | 부장                | 과장<br>(차장)             | 계장<br>(대리)        | 평사원<br>(3년 이상)    | 평사원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 응 시 원 서

본인은 ①제 회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 ※ 안양시<br>수입증지<br>첨부란 | 주 소           | (⊕ )   |                         |  |
|                      | 전 화<br>(휴대전화) | E-mail |                         |  |
|                      | *응시<br>번호     | 성 명    | (한글)<br>(한자)            |  |
|                      | 복수국적<br>해당여부  | 생년월일   |                         |  |
|                      |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        | _____분야 _____임기제 _____급 |  |

|      |                                   |                         |      |  |  |
|------|-----------------------------------|-------------------------|------|--|--|
|      | 제 회( ) 임용시험<br>응 시 표              | 성 명                     | (한글) |  |  |
|      | *응시<br>번호                         |                         | (한자) |  |  |
|      | 채용분야<br>및<br>응시직급                 | _____분야 _____임기제 _____급 |      |  |  |
|      | 201 년 월 일<br><b>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b> |                         |      |  |  |
| 보완사항 | _____를(을) 월 일까지<br>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면접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시험명 : 해당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시험명칭 기재
  -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 기재
  - ③ 연락처, E-mail : 실제 연락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필수 기재) 및 E-mail 주소 기재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 없으면 ‘공란’
  - ⑤ 수입증지
    - 방문(대리)접수 : 응시원서 접수 前 안양시 수입증지 비용을 안양시청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납부 (납부 후 인증계기로 확인)
    - 등기우편 접수 :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8.>

### 년도 금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       |      |
|--------------------------------------|--|--|--|--|--|--|-------|------|
| 필<br>기<br>적<br>감<br>재<br>정<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  |  |  |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  |  |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  |  |  | 성명    | (한글) |
| (한자)                                 |  |  |  |  |  |  |       |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우 수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 보 통 |  |
|                       |  |         | 미 흡 |  |
|                       |  | 답 당 확 인 |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 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8.>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  |       |      |   |
|--------------------------------------|---------------------------------|--|--|--|--|--|--|-------|------|---|
| 필<br>기<br>적<br>감<br>재<br>정<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  |  |  |  |  | 직렬(류) |      |   |
|                                      | 본인필적 :                          |  |  |  |  |  |  | 응시번호  |      |   |
|                                      |                                 |  |  |  |  |  |  | 성명    | (한글)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명 )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 불합격 |  |
|                       |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8.>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  |
|--------------------|-------------------|---|-------------------|--------------------|----------|---|--|
|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 ⑥ 응시연도 및 회 수       | ( )년도제 회 |   |  |
| ※ 급                | 직                 |   |                   | 응시지구 (기 호)<br>응시번호 | 지구       | 번 |  |
|                    |                   |   |                   | 직급별                | 급 직      |   |  |
| ① 성명<br>한글<br>(한문) | ② 생년월일<br>... (세) | ④ 성 별<br>남 <input type="checkbox"/><br>여 <input type="checkbox"/> | ⑤ 희망지역<br>제1지역 시군 | ※ 등록심사             |          |   |  |
|                    | ③ 주민등록번호          |   | 제1지역 시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                    |                   |   |                   | ⑩                  | ⑩        |   |  |
| ⑦ 현주소              |                   |   |                   | (사진부착)             |          |   |  |
| ⑧ 병역               | 필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br>입대연월일 ... 제대연월일 ...                             |                   |                    |          |   |  |
|                    | 미필사유              |   |                   |                    |          |   |  |
| ⑨ 학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 · 부문 ·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자격면허             |                   |   | ⑪ 상 별             |                    |          |   |  |
| 연월일                | 종 별               |   | 연월일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⑫ 특 기              |                   | ⑬ 취 미   |                   | ⑭ 운 동              |          |   |  |
|                    |                   |   |                   |                    |          |   |  |
| ⑮ 경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 1. 등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2. 등록장소

○ 시·도, 시·군·구 ○○과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2통
- (3) 주민등록부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초본의 경우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통
-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7)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2매를 완전 부착할 것) 2통
-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정함)
-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을 첨부한다.

###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회 망 지 역 … 회망지역은 제1회망, 제2회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응시연도 및 회수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현주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그 밖의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입한다.
- ⑩ 자격, 면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특 기 … 특기를 기입한다.
- ⑬ 취 미 … 취미를 기입한다.
- ⑭ 운 동 … 즐기는 운동을 기입한다.
- ⑮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⑯ 보증인 또는 후원자 …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 ⑰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을 기입한다.

####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나. 가족사항 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다.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라. 각 란 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 규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①<br>등<br>록<br>번<br>호 | ②<br>등<br>록<br>연<br>월<br>일 | ③<br>성<br>명 | ④<br>생<br>년<br>월<br>일 | ⑤<br>성<br>별 | ⑥<br>현<br>주<br>소 | ⑦<br>최<br>종<br>출<br>신<br>학<br>교<br>명 | ⑧<br>특<br>기 | ⑨<br>병<br>열<br>필<br>미<br>필 | ⑩<br>회<br>망<br>기<br>관 | ⑪ 신원<br>조사 |        |        | ⑫ 추천        |             |             |             |             | ⑬ 임용        |        |                  | 비<br>고 |  |  |  |  |
|-----------------------|----------------------------|-------------|-----------------------|-------------|------------------|--------------------------------------|-------------|----------------------------|-----------------------|------------|--------|--------|-------------|-------------|-------------|-------------|-------------|-------------|--------|------------------|--------|--|--|--|--|
|                       |                            |             |                       |             |                  |                                      |             |                            |                       | 의<br>퇴     | 회<br>보 | 송<br>부 | 제<br>1<br>회 | 제<br>2<br>회 | 제<br>3<br>회 | 제<br>4<br>회 | 제<br>5<br>회 | 연<br>월<br>일 | 직<br>명 | 근<br>무<br>관<br>서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안 양 시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계 급 | 직 렬 | 추천인원수 | 임용자수<br>(임용예정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 안 양 시 장

|     |
|-----|
| 직 인 |
|-----|

1. 임용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연월일 | 임용직급 | 임용직위 | 비고 |
|------|----|-------|------|------|----|
|      |    |       |      |      |    |
|      |    |       |      |      |    |

2. 임용불응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불응사유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실 무 수 습 계 획 서

|                     |                   |                    |             |          |            |            |                  |  |  |  |
|---------------------|-------------------|--------------------|-------------|----------|------------|------------|------------------|--|--|--|
| 성 명                 |                   | 성 별                | 남<br>·<br>여 | 생년<br>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  |  |
| 시험구분                | ( )직<br>제 회 5급공무원 |                    | 시험          | 합격일자     | 년 월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 학 력                 |                   |                    |             | 경력       |            |            |                  |  |  |  |
| 임용상황                | 임용일자              | 임용부서               | 시보시간        |          | 시보단축<br>기간 | 시보단축<br>사유 | 보직부여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br>월간 | 년 월 일    | 월          |            | 일자: 년 월 일<br>직위: |  |  |  |
| 수습<br>계획<br>및<br>실적 | 배치부서              |                    |             |          |            |            |                  |  |  |  |
|                     | 수습<br>계획<br>기간    | . . . . ~<br>( 일간) |             |          |            |            |                  |  |  |  |
|                     | 실지<br>수습<br>기간    | . . . . ~<br>( 일간)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2. 3. 2.>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5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순    위 |    |    | 소<br>속 | 성<br>명 | 총<br>평<br>정<br>점 | 점수산출내역                       |      |                         |
|--------|----|----|--------|--------|------------------|------------------------------|------|-------------------------|
| 최초     | 조정 | 조정 |        |        |                  | 승진후보자<br>명부상의<br>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br>예정직급의<br>교육훈련성적 |
|        |    |    |        |        |                  |                              |      |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